

충청북도순환수렵장운영관리조례제정(안)

의안
번호

452

제출년월일 : 1995.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제정사유

- 야생조수보호증식과 국민의 건전한 수렵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순환수렵장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 순환수렵장운영관리에 대한 경인위리회 등 기하고자 함.

□주요골자

- 순환수렵장 운영관리
 - 조수포획승인 및 사용료징수
 - 수렵방법 및 총렵제한
 - 수렵안내원 배치등에 관한사항
 - 수렵업무 대행등에 관한사항

□근거법령

-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제13조

□참 부

1. 충청북도순환수렵장운영관리조례제정안 1부
2. 관계법규 발췌 1부.

충청북도순환수렵장운영관리조례 (안)

-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이하 '법률'이라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하는 충청북도순환수렵장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명칭) ①수렵장의 명칭은 충청북도순환수렵장(이하 '수렵장'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제1항에서 순환수렵장이라 함은 고정시설물을 설치하지 않고 수렵구역만을 지정운영하는 수렵장을 말한다.
- 제3조 (위치 및 구역) 수렵장의 위치 및 구역은 충청북도 인원으로 한다. 다만, 수렵금지 구역은 제외한다.
- 제4조 (수렵기간) 본 수렵장의 수렵기간은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기간으로 한다.
- 제5조 (관리사무소) 도지사는 수렵장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시.군.출장소.구청.읍.면.동 기타 필요한 지역에 수렵장관리사무소를 둘 수 있다.
- 제6조 (조수포획 승인등) ①수렵장에서 조수를 포획하고자 하는 자는 수렵면허장을 소지한 자로서 시장.군수의 수렵조수포획(이하'포획'이라 한다)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포획승인을 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포획승인 신청서에 수렵면허장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포획기간 변경등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할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변경신청을 승인받은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포획승인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구비서류를 확인하여 별지 제2호 서

식에 의한 포획승인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 (사용료) 포획승인을 받고자하는 자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공고한 수렵장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 및 그를 수행하는 사람
2. 주한외교관, 외국사절 및 이에 준하는 자

제8조 (사용료의 사용제한) 수렵장의 사용료 수익금은 100분의 30범위안에서 산림개발기금의 조성재원으로 사용하고 잔여 수익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 수렵장 선정, 운영, 관리 경비
2. 조수보호기본계획 및 사업계획에 의한 조수보호사업
가. 표지판 설치, 새집가설 및 먹이식물 식재등 조수보호구 설정관리에 따른 보호사업
나. 야생조수의 인공증식 및 방사.
다. 야생조수의 서식 실태조사.
라. 조수보호원 배치, 불법포획 단속, 먹이주기, 야생조수진료센터 운영 및 조류 관측소 설치등 조수보호사업
마. 조수애호 모범교 지정관리, 수렵강습, 조수애호 주간행사, 야생조수관람장 조성 및 홍보물 제작등 조수보호 계몽사업
3. 야생조수 보호번식에 관한 연구기관 또는 단체보조
4. 기타 수렵장 설정에 따른 총기보관관리, 안전사고방지 교육 및 홍보

제9조 (수렵금지구역)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렵금지구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조수보호구 및 금렵구
2. 도로법 제2조에 의한 도로로부터 1 km 이내의 장소

3. 공원구역 및 관광지
4. 문화재 보호구역
5. 농묘, 사찰, 교회 또는 이에 준하는 시설의 경내
6. 군사시설 보호구역
7. 도시계획 구역
8. 자연생태계 보전구역
9. 기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조수보호 및 안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지역

제10조 (수렵방법과 총렵제한) ①포획자란, 입중(라이플총을 제외한다) 및 공기총을 이용한 수렵을 하여야 한다. 다만 총렵시에는 사냥개를 이용할 수 있다.

②포획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총렵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시가지, 인가부근, 기타 여러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장소에서의 총렵
2. 해뜨기전과 해진후의 총렵
3. 진행중인 차마(경운기포함), 선박 및 항공기에서의 총렵
4. 인명이나 가축 또는 문화재, 건축물, 차량, 철도차량, 선박이나 항공기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총렵
5. 문화재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1km안에서 하는 총렵

제11조 (수렵조수의 범위) 수렵장내에서의 포획조수의 종류와 수량의 범위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공고한 내용에 의한다.

제12조 (포획조수의 신고) ①포획자는 수렵장에서 조수를 포획할 때에는 조수별 포획수량을 3일마다 수렵장에서 가까운 시·군·출장소 또는 구청·읍·면·동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고를 받은 구청장 및 읍·면·동장은 그 내용을 시장·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포획승인등의 취소) ①시장·군수는 수렵자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위반 하였을 때에는 수렵면허 및 포획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타 시·도 및 시·군에서 발급한 수렵면허장 소지자에 대하여 포획승인을 취소한 경우, 면허장 발급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제9조 각호의 수렵금지 구역에서 수렵행위를 하는 자
2. 제10조 제2항 규정을 위반한 자
3.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②제1항 규정에 의하여 수렵면허 및 포획승인을 취소받은 자에 대하여는 취소된 날로부터 2년간 수렵면허 및 포획승인을 할 수 없다.

③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렵면허 및 포획승인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 (조수포획 승인증 회수) ①포획자는 승인을 받은 수렵기간이 종료 되었거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포획승인증 발급관서 또는 가까운 시·군에 반납 하여야 한다.

②전항에 의하여 회수된 포획승인증이 당해군에서 발급한 것이 아닌 것은 발급 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15조 (수렵안내등) ①시장·군수·출장소장은 주로 외국인등 포획자의 수렵안내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수렵안내원(이하 "안내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원의 자격·임무·자격취소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안내원이 수렵을 안내할 때에는 수렵인으로 부터 안내료 및 엽건료(사냥개를 제공한 경우에 한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④제3항의 안내료 및 업건료는 안내원과 수렵인이 협의하여 결정하되
도지사가 정하는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제16조 (조수보호원의 배치) 시장·군수·출장소장은 야생조수의 보호를 위
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렵지역에 유급 조수보호원을 배치할 수 있으며
내국인 입렵자 및 조수보호에 관심이 있는 자를 명예조수보호원으로 위
촉할 수 있다.

제17조 (시설물의 설치) ①도지사는 조수보호증식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세집, 벽이동 및 물통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수렵장에는 안내원, 경계표시판 및 수렵금지 표시판등의 필요한 시설물
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8조 (안전관리) ①시장·군수는 포획승인증을 교부할 때에는 총기사용
및 안전관리등 수렵자의 주의사항을 알려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수렵자는 2인이상 조를 편성하여 수렵에 임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②도지사·시장·군수는 총렵에 의한 사고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는 수렵지역과 수렵행위를 제한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제한내용을 도지
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는 포획승인증을 교부한후 치안 및 군사작전 또는 보안유지상
부득이한 사유로 포획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포획기간을
단축 또는 포획을 중지시킬 수 있다.

제19조 (업무대행등) ①도지사는 수렵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수렵하는 사람
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으로 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조수보호
및 수렵관련·단체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조수관련 단체에게 다음 각호
의 업무를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1.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시행규칙(이하 법'규칙'이라한다)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수렵조수 포획승인신청 및 수렵조수 포획승인증 교부. 회수

2. 동 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포획신고 및 포획조수 확인표시

3. 수렵안내원의 관리

4. 기타 도지사가 수렵장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에 수렵업무를 대행 또는 위탁할 때
에는 충청북도수입증지조례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충청북도 수입증지
판매인으로 지정한 수 있으며, 단체는 수렵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수
렵관리사무소를 설치 하여야 한다

제20조 (수렵지도 단속등) ①시정, 군수, 읍정소장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행위에 대한 지도 단속토록 하여야 하며, 수렵면허장 및 포
획승인증 소지여부와 포획한 조수 및 그알, 짐, 박게품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제9조에 의한 수렵금지구역내에서의 수렵행위

2. 제10조, 제11조, 제12조의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

3. 기타 불법행위

②수렵지도 단속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
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21조 (다른법률의 준용) 조수의 보호증식 및 수렵에 관한 사항중 이 조
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및 조수보호및
수렵등에관한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
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수 렷 조 수 포 획 승 인 신 청 서				처리기간
				즉 시
신청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
	③ 주 소			
④ 포 획 징 소				
⑤ 조수범포획예정량			⑥ 포 획 기 간	
⑦ 총 기 의 총 류			⑧ 수렵장사용료 원	
<p>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렵장의 수렵조수범 포획코지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청 인 : (서명, 날인 또는 무인)</p> <p style="text-align: center;">귀하</p>				
구비서류				수 수 료
1. 면허장사본 1부.				없 음
2. 보험가입증명서류사본 1부.				

수렵조수포획승인증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
③ 주 소			
④ 포 획 기 간			
⑤ 포 획 장 소		⑥ 조수별포획예정량	
⑦ 수렵면허장번호		⑧ 총 기 의 총 류	
<p>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수렵조수의 포획을 승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인)</p>			
<p><준수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포획할 때는 수렵면허증과 같이 이를 휴대하여야 합니다. 2. 포획기간, 포획조수별, 포획예정량의 제한 사항을 준수하고 그 포획물을 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3.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과 도지사가 명령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4. 총기는 총기안전수칙에 따라 안전하게 취급하여야 합니다. 5. 다음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관계당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폭팔물, 독극물, 함정, 기타 기구등을 사용한 불법포획자 나. 불법벌채, 굴취, 채취등 산림훼손 행위 및 산불 다. 간첩용의자 			

(별지 제3호 서식)

수렵조수포획승인사항변경신청서

귀 업장에 다음과 같이 입렵기간(장소)를 변경코자 하오니 승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서명, 날인 또는 무인)

귀 하

입렵기간	당초 199 - 199 (일간)
	변경 199 - 199 (일간)
변경사유	

관계법규 발췌

【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

제12조 (수렵조수) ①수렵할 수 있는 조수(이하'수렵조수'라 한다)의 종류와 포획할 수 있는 기간(이하'엽기'라 한다)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수렵조수외의 조수는 포획하지 못하며 수렵조수를 포획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엽기중이어야 한다.

제13조 (수렵장) ①국가 또는 자치단체는 조수보호증식과 국민의 건전한 수렵활동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지역에 수렵장을 설정할 수 있다

②이 법 또는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수렵장밖에서는 수렵조수를 포획하지 못한다

③수렵장 안에서 수렵조수를 포획하고자 하는 자는 수렵장 설정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렵장 설정자의 승인을 얻어 조수를 포획한 자는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획한 조수의 종류, 포획수량등에 관하여 수렵장 설정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수렵장 설정자는 수렵장안에 수렵에 필요한 시설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토지 위에 정당한 권리를 가진자의 동의를 얻거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⑥수렵장 사용료등 수익은 수렵장 시설의 설치, 유지 및 관리와 조수보호사업외의 목적에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수렵장 사용료등의 수익금중 100분의 30의 범위 안에서 산림법 제104조 제1항의 산림개발기금의 조성재원으로 활용 할 수 있다

⑦수렵장 설정자는 수렵장안에서 수렵을 하고자 하는자에 대하여 수렵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보상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 할 수 있다.

제17조 (수렵금지장소) 국가 또는 자치단체는 조수보호증식과 국민의 건전한 수렵활동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지역에 수렵장을 설정할 수 있다

1. 이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조수보호구
2. 이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금렵구
3. 도로법 제2조에의 규정에 의한 도로
4. 자연공원법 및 도시공원법의 규정에 의한 공원나 및 도시공원
5. 농묘. 사찰. 교회 또는 이에 준하는 시설의 경내
6. 문화재가 있는장소 또는 문화재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연 생태계 보전구역
7. 군사시설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군사보호구역
8. 도시계획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
9. 관광진흥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10. 환경보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연생태계 보전구역
11. 기타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장소

제18조(총렵제한)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수렵장에서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총기사용수렵(이하 '총렵'이라 한다)은 이를 하지 못 한다

1. 시가지, 인가부근, 기타 여러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장소안에서의 총렵
2. 해뜨기 전과 해진 후의 총렵
3. 진행중인 차마. 선박 및 항공기에서의 총렵
4. 인명이나 가축 또는 문화재, 건축물, 차량, 철도차량, 선박이나 항공기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총렵 .
5. 문화재가 있는 장소 또는 문화재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1km안에서 하는 총렵

【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5조(수렵금지장소) 법 제17조제11호에서 '기타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장소'라

함은 다음의 곳을 말한다

1. 도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부터 1km이내의 장소
2. 해안선으로부터 2km이내의 장소
3. 기타 조수보호 또는 인명. 재산. 가축등에 대한 피해발생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 수렵장 설정자가 인정하는 지역

【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규정(산림청훈령 460호) 】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② "고정수렵장"이라 함은 동일지역에 대한 수렵장의 존속기간이 2년 이상으로서 고정시설물을 설치 운영하는 수렵장을 말한다
- ③ "순환수렵장"이라 함은 수렵장의 존속기간이 1년이하로서 고정수렵장 이외의 지역에서 도단위로 순환 운영하는 수렵장을 말한다

제5조(수렵안내원의 배치등) ①수렵장 설정자는 수렵장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렵안내원을 둘수 있으며, 수렵안내원의 자격.배치.교육.복무.안내료등에 관한 사항은 수렵장 설정자가 따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렵안내원은 다음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1. 조수보호 및 수렵안내
- 2. 수렵인에 대한 금지.제한 및 준수사항등의 이행여부 확인
- 3. 불법포획자, 불법벌채, 불법 산림훼손행위와 병해충.산물등의 신고
보호구역으로부터 1km안에서 하는 총렵

제13조(업무대행등) ①수렵장 설정자는 수렵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수렵자의 편의를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야생조수보호.번식에 관한 연구기관에 또는 단체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1. 조수렵조수포획승인신청 및 수렵조수포획승인증 교부
- 2. 수렵조수 포획신고 및 포획조수 확인표지
- 3. 기타 수렵장 설정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수렵장 설정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야생조수보호.번식에 관한 연구기관 또는단체에 대행하게 할 때에는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수렵장 설정자는 수렵장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이 규정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자체 준칙을 제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충청북도수입증지조례 】

제7조 (판매인의 지정) ①증지는 도지사가 지정한 판매인(이하"판매인"이라 한다)이 아니면 판매할 수 없다

②도지사는 증지를 판매하는데 필요한 자력 및 신용이 있는 자 중에서 증지판매인을 지정하여야 한다